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대한민국

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다자통상협력과 이민철 과장(2110-4493), 이정민 사무관(2110-4498)

G20 무역 및 투자조치에 관한 제10차 보고서 회람
- 보호주의조치 관련 모니터링-

□ WTO/OECD/UNCTAD 사무국은 12.18(수)(제네바 시각)「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0차 보고서」(대상기간 : 2013.5월 중순 ~ 2013.11월 중순)를 회람함

○ 동 보고서는 G20 정상간 "무역 및 투자제한조치 신설 금지 약속(Standstill)"에 대한 G20 회원국 각국의 이행 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발간중

(무역 및 무역관련 조치)

□ 보호주의 동결 약속에도 불구하고 G20 국가들이 2013.5월 중순 이후 도입한 무역제한조치는 총 116건으로, 지난 대상기간(2012.10월 중순 ~ 2013.5월 중순, 109건)에 비해 증가

○ 상기 무역제한조치는 G20 회원국 상품수입의 1.1%, 세계 상품수입의 0.9%에 영향

○ 무역제한조치는 △무역구제 △관세 인상, 통관절차 강화 등 수입제한조치 △수출물량제한 등 수출제한 조치 △기타 조치로 구분되며, 무역구제조치가 가장 빈번(70건)

- 무역구제는 반덤핑(58건), 상계관세(10건), 긴급수입제한조치(2건)로 구성

<표1> G20 회원국들의 무역제한조치 도입 추이

(단위: 건수)

구 분	5차 보고서 ('10.10월 중순 ~ '11.4월)	6차 보고서 ('11.5월 ~ 10월 중순)	7차 보고서 ('11.10월 중순 ~ '12.5월 중순)	8차 보고서 ('12.5월 중순 ~ 10월 중순)	9차 보고서 ('12.10월 중순 ~ '13.5월 중순)	10차 보고서 ('13.5월 중순 ~ 11월 중순)
무역구제	53	44	66	46	67	70
수입제한	52	36	39	20	29	36
수출제한	11	19	11	4	7	8
기타	6	9	8	1	6	2
합계	**122**	**108**	**124**	**71**	**109**	**116**

□ 2008.10월 이래 도입된 총 무역제한조치 중 20%만이 제거되었으며, G20 회원국 상품수입의 3.9%, 세계 상품수입의 5%가 현재까지 누적된 무역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고 있음

□ 한편, 금번 대상기간 중 취해진 무역촉진조치*는 전체 조치 중 약 33%로서, 지난 대상기간(40%)에 비해 감소

* 무역구제조치 종료 및 관세 인하 등

□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입한 무역조치는 없음

(투자 및 투자관련 조치)

□ 투자 및 투자관련 조치는 △투자특정조치, △국가안보 관련 투자조치, △국제투자협정으로 구분되며, 대상기간 동안 12개 회원국이 조치 도입

○ 6개국(브라질, 캐나다, 중국, 인도, 멕시코, 우리나라*)이 투자특정조치를 도입하였으며, 대다수 조치가 국제투자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취해짐

*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건 수록

○ 독일이 유일하게 국가안보 관련 투자조치 도입

○ 4건의 양자투자협정(캐나다 1건, 일본 1건, 터키 2건)과 4건의 여타 투자협정(캐나다 1건, 중국 1건, 미국 2건) 체결

□ 사무국은 G20 회원국들이 신규 투자제한조치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전반적으로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

○ 지난 5년간 도입된 조치들은 대부분 투자 제한을 철폐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조치들이었음

(G20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)

□ 발리 패키지 채택을 통해 발생된 긍정적인 모멘텀을 바탕으로 세계 무역체제가 강화되는데 있어 G20 국가들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리더쉽이 중요함

□ 다자무역체제는 보호주의에 대한 최선의 방어이며, 경제성장, 지속가능한 회복 및 개발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동력임

○ 더디고 불균등한 경제회복과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한 보호주의 압력은 계속될 것이므로, 성장, 고용 창출 및 개발의 원천으로서의 무역과 투자에 주목해야 함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이정민사무관(☎ 02-2110-449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